

호크마교양대학 규정

2015. 11. 27.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4조제1항제2호 및 「이화여자대학교 직제」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호크마(HOKMA)교양대학(이하 “호크마대학”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호크마대학은 교양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건전한 인격과 교양을 갖춘 주도하는 인재, 지혜로운 인재, 실천하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교양교육과정 정책 개발 및 연구
2. 교양교과목 개발, 운영 및 관리
3. 교양교육 전담 교원 평가 및 관리
4. 교양교육과정 평가
5. 호크마인증제 운영
6. 호크마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7. 기타 호크마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학장) ① 호크마대학에 학장을 두며, 학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호크마대학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부학장) 호크마대학에 부학장을 둘 수 있으며, 부학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5조(전임교원) 호크마대학 소속으로 인성교과, 글로벌소통교과, 사고와표현교과를 담당하는 전임 교원을 둔다.

제6조(조직) ① 호크마대학에 인성교육실, 글로벌소통교육실, 사고와표현교육실, 호크마교양교육연구센터, 호크마역량강화센터 및 행정실을 둔다.

② 인성교육실은 인성교육 관련 교과목 개발,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한다.

③ 글로벌소통교육실은 교양영어, 교양외국어 등 관련 교과목 개발,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한다.

④ 사고와표현교육실은 논리적 사고와 글쓰기 관련 교과목 개발,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한다.

⑤ 호크마교양교육연구센터는 융복합교육과 미래설계교육 관련 교과목 개발, 교양교육과정 정책 개발 및 기타 교양교육 연구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⑥ 호크마역량강화센터는 호크마인증제 개발 및 관리, 호크마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기획,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⑦ 행정실은 호크마대학 행정 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사무직원 및 연구원, 조교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 ① 호크마대학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호크마교양대학 규정

1. 호크마교양교육위원회는 호크마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호크마교양교육위원회 내에는 인성교육, 사고와표현교육, 글로벌소통교육, 융복합교육 및 미래설계교육에 관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호크마교양대학운영위원회는 호크마대학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예산 및 결산,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호크마대학의 주요 사항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각 위원회는 호크마대학의 학장 및 학장이 추천하는 본교 교원 중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장으로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회는 학기 중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학사운영세칙) 호크마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호크마교양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칙 (2015. 11. 27.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규정의 제정으로 교양교육원 규정 및 교양영어실 규정은 폐지한다.